

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

2012. 8

조재린·이기형·정인영

보도용 설명자료

I. 서론

-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배상금이 조기 소진되어 가족의 생계 및 자녀 교육이 곤란해지고 나아가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.
-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인적사고 보상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지급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함.

II. 인적사고의 손해배상체계 현황

1. 인적사고의 발생현황

- 국내에서 재난사고는 하루 평균 747.3건 발생하며, 그로 인해 21.6명이 사망하고 952.6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.
- 인적사고의 원인으로는 도로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, 화재, 수난, 추락, 해양, 폭발 등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음.

2. 인적사고의 손해배상체계

-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 대부분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.

- 인적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사고와 화재사고, 가스사고 등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적용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을 강제함.
-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.

■ 그러나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음.

- 민법 제751조와 제725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정기금배상이 가능하며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 정기금배상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.
- 그러나 이러한 민법상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에서는 일시금 지급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음.

3. 산재사고의 보상제도

■ 산재보험의 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, 질병,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함.

- 이때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의비, 간병급여, 직업재활급여는 일시금으로, 상병보상연금, 장애급여,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 가능함.
- 총 급여 중 연금급여 비중은 2010년 현재 기준으로 30% 이상으로 연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
4. 자동차 등 사고 보상제도

■ 국내 인적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표준보통약관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과 정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- 그러나 보상실무에서는 피해자의 향후치료비, 개호비에 대해서는 정기금

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, 상실수익과 위로금에 대해서는 정기금지급이 전무한 실정임.

-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재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서 정기금지급에 관한 언급은 없음.

Ⅲ. 국내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

1. 일시금지급의 문제점

- 인적사고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, 조기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피해자의 소득보상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.
- 이러한 경제적 빈곤은 자녀양육 및 교육 곤란, 부부관계문제, 가족갈등, 부모 부양문제, 가정폭력 등 가정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.
- 나아가 이와 같이 인적사고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가정문제는 정부의 복지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.
- 또한 보상금의 조기 소진에 따른 경제적 빈곤은 유자녀의 교육 기회 박탈과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고, 이는 빈곤의 악순환과 함께 범죄 등 사회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2. 사고유자녀 현황

■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는 특히 (미성년) 유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유자녀 수를 추정함.

○ 그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33,283명의 교통사고 유자녀를 포함하여 전체 36,635명의 사고유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.

3. 사고유가족의 자녀 양육비

■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월 평균 828,261원, 가구당 총 양육비는 월 평균 1,507,396원으로 산출됨.

○ 특히 자녀 1인당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은 초등학생은 38.7%, 중학생은 38.3%, 고등학생은 42.3%로 나타남.

■ 앞서 추정한 유자녀 수와 1인당 총 양육비를 바탕으로 사고유자녀 양육비를 산출할 경우 한 자녀 가구의 경우 연 1,141만 원, 두 자녀 가구의 경우 연 1,930만 원, 세 자녀 가구의 경우 연 2,29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
○ 어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남자 26세부터 40세까지의 평균보험금 1억 7,700만 원은 자녀의 총 양육비에는 부족하지만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임.

IV. 주요국의 구조화지급방식 운영현황

1. 미국

- 미국의 구조화지급방식이란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 형태로 받도록 보상방법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함.
 - 이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에 생명보험회사나 수탁회사에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정기금 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임.
 - 이는 일시금의 조기 소진을 막고 안정된 흐름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.
 -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경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령방법, 지급기간, 지급규모 등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 가능함.
 - 또한 사망 후에도 일정기간 지급보증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음.
- 1982년 정기금지급세법(Periodic Payment Settlement Tax Act)을 통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이후 활성화됨.
 - 뉴욕 주를 비롯한 21개 주에서 정기금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음.
-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60억 달러 이상의 구조화지급방식 연금이 판매됨.

2. 영국

- 영국 구조화지급방식의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미국과 유사함.
- Finance Act 1995를 통해 구조화지급방식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, Damages Act 1996을 통해 피해자의 연금수령권을 보호함.

- 2000년 기준으로 연간 200건 정도의 구조화지급방식이 이루어지며 평균규모는 약 50만 파운드에서 70만 파운드로 전체 시장규모는 연간 약 1억 파운드에서 1.5억 파운드로 추정됨.

3. 호주

- 호주 구조화지급방식의 기본적인 운영체제는 미국과 유사함.
-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Division 54 제정을 통해 구조화지급 방식에 세제혜택을 부여함.
- 단, 구조화지급방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퇴직연금(superannuation) 시스템 활용으로 인해 아직까지 구조화지급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함.

V.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다양화 방안

1. 정기금지급 선호도 조사

- 201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, 전체 응답자 중 일시금을 선호하는 비중은 60.9%, 정기금을 선호하는 비중은 39.1%로 나타남.
- 일시금 선호 이유로는 투자용도로 사용 43.2%, 목돈마련 28.8%,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부족 18.1%, 수령불편이 9.9%로 나타남.
-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지급불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.

■ 정기금 선호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 74%, 자녀교육비 마련 14.2%, 가족불화 우려가 7.8%, 갈취와 탕진 우려가 4.0%로 나타남.

- 정기금 선호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, 연령이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.

2. 정기금지급 운영방식

■ 첫째,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

- 우리나라 제도와 현실을 고려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.
- 소비자 입장에서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음.
-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- 예금자보호법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를 통하여 신용리스크의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음.
- 그러나 지급방법이나 적용이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 손해보험회사의 보상업무가 늘어나고,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■ 둘째,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

-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, 여러 단점이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.
-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지급방법을 설계할 수 있고, 모집수수료가 낮은 장점이 있음.
- 그러나 현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는 세제적격 연금만을 취급할 수 있어 다양한 지급방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.
-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파산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는 예금자보호법밖에 없어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.
-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■ 셋째,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

- 다양한 지급조건을 설계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의 부담도 덜 수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방법임.
- 미국에서 주로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 또는 기타 수탁회사에게 배상의무를 전가하여 계약을 맺으나,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음.
- 한편 수탁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는 예금자보호법밖에 없어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없음.
-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집수당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.

3. 관련법규 검토

■ 합의의 경우 현재 법규에서는 정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.

- 민법 제725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 정기금 배상이 가능함.
-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5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.

■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정기금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.

- 우리나라 판례는 피해자가 일시금을 원할 경우 정기금을 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.
- 미성년 유자녀나 노부모가 있는 경우 정기금지급을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일시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- 나아가 우리나라는 변호사 선임 문화가 아니므로 정기금지급이 심각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 정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.

- 정기금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 -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금 일시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음.
 - 따라서 정기금 운영방식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정기금을 손해보험금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세제혜택이 가능함.
 - 반면,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이자소득(보험차익)에 대해서 과세함.
 - 미국의 경우 연금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, 수급권만을 부여함으로써 비과세의 명분을 얻음.
 -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임.
- 또한 정기금 지급 시 적용이율과 이율적용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험업계, 소비자 보호단체,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이 필요함.

VI. 결론

-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을 다양화할 경우 일시금지급으로 인한 보험금의 조기 소진 가능성을 줄여 사고 가정의 건전한 복구와 사회적 문제 및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- 아울러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제고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.